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재해보상정책관 및 재해보상정책관 2개 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9.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에 통합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 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 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

별표 1 중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74”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373”을 “37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67”을 “68”로 하고, 행정주사 “18”을 “19”로 하며, 행정주사보 “5”를 “6”으로 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3.0”, “일반직 계 3.0”,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0”, “행정주사 1.0” 및 “행정주사보 1.0”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2 중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75”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374”을 “377”으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67”을 “68”로 하고, 행정주사 “18”을 “19”로 하며, 행정주사보 “5”를 “6”으로 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3.0”, “일반직 계 3.0”,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0”, “행정주사 1.0” 및 “행정주사보 1.0”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중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55”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154”를 “156”으로 하며, 행정서기 “7”을 “8”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2”로 하며,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2.0”, “일반직 계 2.0”, “행정서기 1.0” 및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0”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중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4”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33”을 “34”로 하며, 행정주사보 “1”을 “2”로 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 “일반직 계 1.0” 및 “행정주사보 1.0”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종전의 총리령 제143

2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

으로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된 정원 1명(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2년 12월 18일까지 존속한다.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관련)

1. 인사혁신처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인재채용국 공개채용2과	9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3) 인재정보기획관 인재기획담당관	5명 (3급 또는 4급 1명, 5급 3명, 7급 1명)	2022년 3월 31일까지
4)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5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7급 2명)	2022년 3월 31일까지

2. 인사혁신처 소속기관

조직	정원	평가기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	3명 (고위공무원단 1명, 5급 1명, 6급 1명)	2021년 6월 30일까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7퍼센트----- -----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1 제2호, 별표 3 제2	제17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호 및 별표 4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 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은 제외한다)	374	<삭 제>	
·	·	·	
·	·	·	
일반직 계	373	376	+3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 산사무관	67	68	+1
·	·	·	
·	·	·	
행정주사	18	19	+1
·	·	·	
·	·	·	
행정주사보	5	6	+1
·	·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3.0	<삭 제>	
일반직 계	3.0	<삭 제>	-3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 산사무관	1.0	<삭 제>	-1
행정주사	1.0	<삭 제>	-1
행정주사보	1.0	<삭 제>	-1

[별표 1의2]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은 제외한다)	375	<삭 제>	
일반직 계	374	377	+3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 산사무관	67	68	+1
행정주사	18	19	+1
행정주사보	5	6	+1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u>	<u>3.0</u>	<u><삭 제></u>	
<u>일반직 계</u>	<u>3.0</u>	<u><삭 제></u>	-3
<u>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u>			
<u>·시설사무관 또는 전</u>	<u>1.0</u>	<u><삭 제></u>	-1
<u>산사무관</u>			
<u>행정주사</u>	<u>1.0</u>	<u><삭 제></u>	-1
<u>행정주사보</u>	<u>1.0</u>	<u><삭 제></u>	-1

[별표 3]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u>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은 제외한다)</u>	<u>155</u>	<u><삭 제></u>	
.	.	.	
.	.	.	
일반직 계	<u>154</u>	<u>156</u>	+2
.	.	.	
.	.	.	
행정서기	<u>7</u>	<u>8</u>	+1
.	.	.	
.	.	.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u>1</u>	<u>2</u>	+1
.	.	.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u>	<u>2.0</u>	<u><삭 제></u>	
<u>일반직 계</u>	<u>2.0</u>	<u><삭 제></u>	-2
<u>행정서기</u>	<u>1.0</u>	<u><삭 제></u>	-1
<u>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u>	<u>1.0</u>	<u><삭 제></u>	-1

[별표 4]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u>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u>	<u>34</u>	<u><삭 제></u>	
<u>공무원은 제외한다)</u>			
·	·	·	
·	·	·	
일반직 계	<u>33</u>	<u>34</u>	+1
·	·	·	
·	·	·	
행정주사보	<u>1</u>	<u>2</u>	+1
·	·	·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u>	<u>1.0</u>	<u><삭 제></u>	
<u>일반직 계</u>	<u>1.0</u>	<u><삭 제></u>	-1
<u>행정주사보</u>	<u>1.0</u>	<u><삭 제></u>	-1